

의안번호	2214665
의 퇴 인	강경숙 의원
회 답 일	2026.01.27.
추계번호	25C664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①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②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억 100만원(연평균 2,020만원)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종합계획 수립(안 제7조)	43	-	-	-	-	43	8.6
실태조사(안 제8조)	58	-	-	-	-	58	11.6
합계	101	-	-	-	-	101	20.2

주: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이념을 존중하고 함께 실천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항)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3	안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항) 교육부장관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기초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4	안 제8조 (실태조사)	(제1항)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량규정
5	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1항)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은 관할 구역의 시·군 및 자치구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재량규정
6	안 제10조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	(제1항)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1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등)	(제1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변경 지원 2.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5. 지역사회의 인력·시설 등 인프라 발굴 및 활동 지원 6.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7. 마을교육공동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 교육감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선언적·권고적 의미의 조항으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와 지역 간 유기적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지역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 교육혁신지구,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생태계 등으로 명칭이 상이하나,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제정안이 규율하고자 하는 마을교육공동체와 동일함 ·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센터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의 발생 여부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3	안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	
4	안 제8조 (실태조사)	○	
5	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협력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정안에 따라 협력체계 구축 및 센터의 공동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협력체계의 구체적인 내용, 공동 운영 여부 등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산출하기 곤란함
6	안 제10조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 안 제11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등)	×	· 제정안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도에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규정함 ·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의 발생 여부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참고로, 제정안은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 및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추계서에서는 ①마을 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안 제7조) 및 ②실태조사(안 제8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7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5년 주기로 계획 수립 비용이 지출되며,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부터 연구용역비 지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연구용역비 외에 자문, 자료 제작, 홍보를 위한 제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다고 가정
 - (안 제8조) 기본계획과 동일한 주기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며, 교육부의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현행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의 규정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재검토가 이루어지며, 연구용역비 외에 자문, 자료 제작, 홍보를 위한 제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다고 가정
 - * [참고자료 1]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 현황
 - * [참고자료 2]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 현황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안 제7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4,300만원으로 추계

- 관련 사례의 연구용역비 평균값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을 적용하여 산출

[표 2] 기본계획 관련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연구주제	소관	사업연도	연구용역비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안) 마련을 위한 연구	교육부	2020	40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비전 및 주요과제 설정 연구	교육부	2021	30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부	2021	36

자료: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표 3]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종합계획 수립(안 제7조)	43	-	-	-	-	43	8.6

주: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실태조사 실시(안 제8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정부의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5,800만원으로 추계

[표 4]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연구주제	소관	사업연도	연구용역비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고등학교 수업 유형별 학생 참여 실태조사	교육부	2023	40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교육부	2025	70
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 실태조사	교육부	2025	55

자료: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표 5]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실태조사(안 제8조)	58	-	-	-	-	58	11.6

주: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1]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 현황

구분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서울	○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구, 중랑구(12)
부산	○	금정구, 동구, 북구, 사상구, 연제구, 영도구(6)
대구	○	남구, 서구, 수성구(3)
인천	○	남동구,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8)
광주	○	—
대전	○	유성구, 대덕구, 동구, 서구, 중구(5)
울산	○	동구, 북구, 울주군(3)
세종	○	—
경기	○ ¹⁾	동두천시, 오산시, 의정부시, 포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안양시, 양주시, 안산시, 여주시, 파주시, 하남시(12)
강원	○	양양군, 인제군, 홍천군, 횡성군(4)
충북	○	옥천군(1)
충남	○	공주시, 논산시,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천안시, 청양군, 홍성군(8)
전북	○	임실군(1)
전남	○	강진군, 광양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영암군, 장성군, 해남군(9)
경북	○	—
경남	×	양산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창녕군, 함양군(7)
제주	○	—
합계	16	79

주: 1. '26년 1월 기준 자료임

2. 유사 취지를 가진 교육지구(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교육혁신지구,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등)에 대한 조례를 포함하여 산출한 값임

1) 2025.7.18.일자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관련 조항이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육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분리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자료 2]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 현황

구분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서울	×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18)
부산	○	기장군, 강서구, 금정구, 남구, 부산진구, 사상구, 사하구, 연제구, 해운대구(9)
대구	○	달성군, 달서구, 동구, 북구, 수성구, 중구(6)
인천	○	강화군, 옹진군, 계양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7)
광주	○	광산구, 서구(2)
대전	×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5)
울산	○	울주군, 남구, 동구, 중구(4)
세종	○	—
경기	○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연천군(22)
강원	○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횡성군(11)
충북	○	제천시,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6)
충남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아산시, 천안시(6)
전북	×	김제시, 남원시, 전주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6)
전남	○	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주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17)
경북	○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포항시, 울릉군, 울진군(6)
경남	○	거제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창녕군, 함양군(9)
제주	×	—
합계	12	134

주: '26년 1월 기준 자료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